발명권과 특허권에 대한 일반적리해

리 선 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 다.》(《김일성전집》제50권 234폐지)

과학과 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을 비상히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은 과학기술발전수준에 의하여 나라의 국력이 결정되고 나라와 민족의 지위와 전도가 좌우되고있기때문이다.

여기에서 발명권과 특허권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지고 그에 대한 법적규제와 그를 통한 법적보호를 정확히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무엇보다먼저 발명권에 대한 리해를 바로하여야 한다.

발명권은 발명의 과학기술적내용에 따르는 우선권을 인정하여 발명가에게 부여되는 법적권리이다.

발명권은 발명등록신청자가 발명등록기 관에 해당 발명등록을 신청하고 거기에서 심의를 통하여 부여받게 되는 인격적 및 재 산적권리이다.

발명등록신청은 공화국발명법 제8조와 제12조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 개별 적공민이 발명등록기관에 한다.

이때 발명을 창조한 발명가와 발명기술에 대한 소유권자인 국가는 발명권의 당사자로 나서게 되며 두 당사자는 인격권이외의 재산권도 지니게 된다.

발명가에게 부여되는 인격권은 발명권자가 발명기술에 대한 리용권과 처분권을 전부 국가에 양도하고 국가로부터 발명기술에 대한 우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데서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헌신과 공로로 하여 받게 되는 국가수훈과 표창과 같

은 정치적평가로써 표현된다.

인격적권리는 발명증서와 메달, 기타 과학기술발명의 정도에 따르는 국가수훈과 명예, 영예증서나 칭호 등을 받는데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이러한 증서들에는 발명권자의 이름이 기재되게 된다.

발명권자의 재산권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발명가가 창조한 발명기술이 1년간 생산에 도입되여 국가에 주는 리익금에 비례하는 보상금을 받는데서 그리고 여러가지 형태 의 추가적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데 서 표현된다.

발명권을 받은 발명가의 권리에서 기본 은 재산권보다 인격적권리이다. 그것은 발 명가가 발명권을 신청등록함으로써 자기 의 과학기술성과를 사회에 전면 공개하고 그에 대한 전국가적인 도입과 리용을 일 반화한것으로 하여 법적으로 인정받는 인 격적권리를 더 중시하기때문이다.

공화국발명법에는 발명권자가 받은 인 격적권리의 보호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 았다.

이것은 발명권자의 인격적권리에 대한 보호기간은 법적으로 영원한것으로 해석 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발명권신청을 제기 하여 법적으로 인정받은 발명권당사자가 받 은 인격적권리가 전국가적, 전사회적권리 로 되며 설사 발명권자가 사망하였거나 그 로부터 몇십년, 몇백년이 흘렀다고 해도 그 에 대한 우선권이 법적으로 무기한 담보 되며 보호된다는것이다.

발명권을 받은 당사자의 인격적권리를 무기한 철저히 보호하는것은 사회적으로 발 명을 적극 장려하는 기풍을 세우며 그와 함 께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힘껏 떠밀기 위 한 요구로부터 제기된다.

발명권을 받은 당사자의 인격적인 권

리에 대한 침해문제와 권리효력기한에 대한 문제를 법적으로 옳게 규제하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 자기의 과학적열정과 탐구의 넋을 깡그리 다바치는 발명가들을 응당히 옳게 평가할수 없으며 발명을 적극 장려해나갈수 없게 된다.

사회주의국가는 발명권을 받은 당사자의 인격적권리를 무기한 보호하는 법적 규제를 통하여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공로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발명성과를 영원히 법적으로 담보하고 보호해준다.

발명권의 당사자로서 국가의 권리는 발명기술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국가가 지니는 법적권리로 표현되며 재산권은 발명기술의 도입과 생산, 거래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리익의 소유로써 표현된다.

발명권을 받은 발명가는 그 발명기술에 대한 특허권신청을 다시 제기할수 없다.

이처럼 발명권은 발명당사자와 국가가 발명기술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및 재 사적권리이다.

발명을 창조한 발명가가 발명권자로 등록되는것과 함께 발명기술에 대한 소유권 은 법적으로 국가소유권으로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발명등록신청자는 해당 발명과 관련한 심사비용과 보호비용을 법 적으로 따로 지불하지 않으며 이것들은 국 가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국가는 발명권을 받은 발명기술의 도입과 교류를 관할하며 특히 다른 나라와의 과학기술무역거래관계에서 발명기술의 리용허가권과 제품, 전면양도권도 행사할수 있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과학기 술토론회, 경험발표회, 현상모집 등을 계 획적으로 조직하도록 하고 발명기술에 대 한 국가적인 강연을 따로 조직할수 있으 며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긴급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한 발명성과들에 대해서는 그 도입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조건보장사업을 맡아 진행하면서 도입정형에 대하여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세우다.

발명에 대한 발명권등록신청권은 단독발명과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물론 비직무발명과 직무발명인 경우에도 언제나 발명가에게 있으며 재산권보다 인격적권리를 중시하는 발명권의 특성으로부터 발명신청권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양도할수 없다.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들은 발명권으로 보호되는 발명기술을 따로 승인을 받지 않 고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널리 도입하고 일 반화할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공민은 자체의 개인적리익을 목적으로 하여 발명권으로 보호되는 과학기술을 자의대로 리용할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리용해야 할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이 발명권으로 보호되는 과학기술을 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오직 공화국 국가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승인밑에서만 허용될수 있다. 법적절차를 거쳐 발명기술을 도입하지않고 비법적인 방법으로 발명기술을 도입하지않고 비법적인 방법으로 발명기술을 도입하지 입자나 생산에 리용하는 다른 나라 법인이나개인,일반공민은 그에 대한 엄격한 법적책임과 보상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특허권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 지는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특허권에 대한 일반적인 리해가 특허권신청과 특허기술의 리용, 그를 둘러 싼 여러가지 문제들을 법적으로 더 정확 히 규제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가장 기 초적인 문제이기때문이다.

특허권은 실용적가치가 있는 과학기술적 내용을 발명한자와 그 새로운 기술을 넘겨 받은자에게 인정하여주는 일정한 기간 생 산과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특허권은 특허기술을 신청한 특허권신 청자에 대하여 국가발명등록기관이 엄격 한 심의를 통하여 부여하는 인격적 및 재 산적권리이다.

특허권신청자로는 공화국발명법 제13조 와 제26조에 지적되여있는바와 같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나설수 있다. 다시 말하여 새로운 발명기술을 발명하고 직접 특허권을 신청한 발명가와 발명가에게서 특 허신청과 관련한 권리를 양도받은 다른 개 인이나 법인이 신청자로 나설수 있다.

공동발명인 경우에는 주발명가와 함께 발명기술을 완성한 다른 발명가들도 주발 명가와 같이 련명으로 특허권신청을 할수 있으며 이때 특허권은 주발명가와 다른 발 명가들의 소유로 된다.

특허권당사자로는 실용적이고 가치있는 기술적제안을 완성하고 그에 대한 특허권 을 소유한 발명창조자와 특허신청과 관련 한 권리를 양도받은 다른 개인이나 법인 이 나설수 있다.

때문에 특허권을 신청한 당사자는 공화국 발명법 제13조와 제26조에 따라 발명등록 기관에 일련의 수속료금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는 특허신청료금과 특허등록료금, 특허보호료금을 비롯한 일련의 수속료금 들이 있다.

특허신청료금은 특허신청문건을 제출할때 신청문건과 함께 지불해야 하며 특허 등록료금은 신청문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고 등록기관이 등록을 결정한 다음에 지불해야 한다.

특허보호료금은 보호기간내에 해마다 지 불한다.

특허수속료금은 신청문건의 심의단계에서 제기되는데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일 수속문건이 발명법시행규정세칙의 요구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료와권리복귀료 같은것이 지불되여야 한다. 이

와 같은 료금이 제때에 지불되여야 특허권 신청과 관련한 문제들이 해결될수 있다.

특허권신청을 제기할 때에는 발명기술을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허권이 공개성을 가지지만 발명가들이나 발명을 양도, 허가받은 특허권신청자들은 완전공개하는것을 될수록 피하기 위하여 최대로 노력하며 보호범위를 넓히고기술내용공개를 줄이는 방법을 쓰고있는 추세로 나가고있다.

그렇기때문에 특허권신청문건만 가지고 는 특허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있는것이 보편적인 현 상으로 나타나고있다.

국가는 특허권신청이 정식 비준되여 등록되게 되면 법으로서 특허권자에게 특허기술에 대한 우선권과 재산권을 부여하며일정한 기간안에서 그에 대한 법적담보와보호에 대하여 책임진다. 다시말하여 특허권자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인정하며 그의 정확한 실현을 법적으로 담보하며 보호한다.

이것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가치있는 기술을 더 많이 발명하고 그에 대한 도입과 거래, 생산과 판매가 현실에서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하는데서 그 의의가 있다.

특허권을 단독발명가가 소유하는 경우에 발명가는 해당 발명과 관련한 인격 권과 재산권을 모두 독점하고 행사하게 된다.

특허권이 독자적인 관할권인것으로 하여 그것은 신청전이나 신청후에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되거나 허가될수 있다. 이때 인격권은 실지 발명기술을 발명한 발명가만이 소유한다. 그러므로 특허권이 양도되거나 허가된 경우 인격권의 소유자인 발명가와 재산권을 양도, 허가받은자가 하나의 대상 즉 특허기술을 놓고 특허기술에 대

한 권리자로 나서게 된다.

특허권자에게 있어서 인격적권리이외에 중요한 법적권리는 재산권이다.

인간의 지적창조물인 발명기술도 가치가 체현되여있는 재산으로서 특허권자는 법적으로 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자로 나 선다.

특허권자는 특허발명기술에 대한 점유, 리용, 처분권을 가지며 그에 대한 제조권, 사용권, 판매권, 판매허가권, 수입권 등을 비롯한 법적권리들은 모두 특허권자의 의 사에 따라 행사되게 된다.

제조권은 발명된 기술로 일정한 제품을 만들수 있는 권리이며 다른 사람이 허가 를 받지 않고 해당 특허기술을 리용하여 제 품을 만드는데 대하여 금지시킬수 있는 권 리이다.

사용권은 자기가 제조한 특허제품을 사용하거나 특허기술의 사용 및 그 기술을 리용하여 얻은 제품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이며 자기의 허가가 없이 제3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것을 금지시킬수 있는 권리이다.

판매권은 자기가 제조한 특허제품을 팔 권리이며 제3자가 승인을 받지 않고 특허 제품을 팔거나 직접 특허기술을 리용하여 얻은 제품을 파는것을 금지시킬수 있는 권 리이다.

판매허가권은 자기가 제조한 특허제품의 판매를 다른 사람에게 허가할수 있는 권리이며 판매를 허가받지 않은자가 이 러한 행위를 하는것을 금지시킬수 있는 권리이다.

수입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제조한 특허제품을 수입할수 있도록 허가할수 있 는 권리이며 이러한 행위를 승인없이 하 는데 대하여 금지시킬수 있는 권리이다.

이밖에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다른 사람 에게 이전시킬 권리를 가지며 사용허가계 약을 맺을 권리를 가진다. 특허권자는 특허허가계약을 맺는 방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그 특허기술을 사용하는것을 허가할수 있으며 특허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할수도 있다. 만일 특허권자의 이런 권리들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명백히 특허권침해로 되며 특허권침해자는 특허권자에게 발명법 제41조에 따라해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특허권침해와 관련하여 해당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러저러한 문 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기관 또는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며 허 물이 있는자는 해당한 법적, 재정적처분을 받게 된다.

법이 정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승인이 없이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을 리용하여 도 특허권침해로 되지 않는다.

공화국 발명법에서는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다른 나라 운수수단의 수리정비를 진행하기나 과학연구 및 실험을 진행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제조하는데서는 특허권자의 승인이 없이도 특허기술을 리용할수 있도록 규제하고있으며이 경우에는 특허권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의의를 가지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소유자에게서 국가가 리용할데 대한 매매계약의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특허권을 사거나 혹은 해당 기관에 그리용을 허가하여줄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가는 특허권리용에 대한 해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특허권은 법에 의하여 자기의 보호기간 이 정해져있다.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15년이며 특허권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5년간을 더 연장하 여줄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특허발명 기술에 대한 법적보호문제가 설정되지 않 으며 누구도 그 특허기술을 사용하여도 특 허권침해로 되지 않는다. 특허권은 이와 같이 실용적의의와 가치가 있는 기술을 발명한자와 그 새로운 기술을 넘겨받은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인정하여주는 생산과 판매에 대한 독자적인 관할권이다.

발명권과 특허권에 대한 리해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서는 그 공통점과 차이점도 잘 알아야 한다.

우선 공통점은 발명권과 특허권이 다같 이 발명기술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있다.

새롭고 가치있는 기술적제안에 대한 권리의 설정에서 당사자들은 자기의 의사에따라 발명권 또는 특허권을 신청할수 있으며 정식 비준등록되면 해당 권리들이 인정되고 보호되며 그 실현이 담보된다.

여기에서 약간한 차이점이 있다면 새로운 발명기술이라고 해도 그것이 인민

들의 안정된 생활보장에서 실용적인 가 치가 없거나 발명기술의 독점적소유로 나 라의 기술발전에 저해를 주는 기술적제 안들에 대하여서는 특허권을 주지 않는 다는데 있다.

나라들마다 이에 대하여 서로 달리 규제들을 하고있지만 대체로 공업화할수 없는 기술과 상업적목적으로 리용할수 없는 제품이나 공정들은 새로운 발명기술이라고 해도 특허권을 주지 않는것이 국제적으로 일반적이다.

우리는 앞으로 발명권과 특허권의 법적 규제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지고 그에 대한 법적규제와 그를 통한 법적보호를 더 높은 단계에서 철저히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